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
----------	-----

2019.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돈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4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4월 18일

-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돈 의원)

가. 제안사유

-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 2018. 9.21.)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 그 밖에 용어, 문구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확대함.(안 제2조).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을 정비함. (안 제3, 5조).
 - “공무상재해인정 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 용어·문구 정비
 - “구좌” → “계좌” (안 제8조)
 -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장” → “충청북도 청주·충주의료원장” (안 제9조)
 -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제12조)
 -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의원 상해·장애·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 2018. 9.21.) 제정·시행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삭제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옮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회기란** 지방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의원 및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되는 임시회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34조의 회기라 함은 이러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의미하고 회기 중 직무에는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반드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회기 중 직무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직무’를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즉, ①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원으로서의 기타 직무를 수행한 경우와 ②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제2조의 직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임.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p> <p>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p>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함.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안 제3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기존 ‘공무상재해인정 기준’ 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가 기존에는 별도의 ‘공무상재해인정 기준’ 을 준용했었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 2018. 9. 21.)에 규정된 바, 이를 준용토록 개정함.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안 제5조는 장애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을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존 “청구자” 를 “청구권자” 로 개정함.
 - “청구자” 는 규정된 청구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뜻하며, “청구권자” 는 청구의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는 용어로,
 - 본 조항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하는 “청구권자” 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좌” 를 순화용어인 “계좌” 로 변경함.
-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장” 을 정확한 용어인 “충청북도 청주·충주의료원장” 으로 개정함.
- 안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하고, 부정적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인용된 조례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부합한 정확한 조례명인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변경함.
- 별지제1호서식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 행	개정안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u>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u>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u>장해진단서 1부</u> ,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u>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u>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u>병원진단서 1부(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u>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18. 9.21.)의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 의 자 :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박문희, 이상식

1. 제안이유

-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3.20. 공포, 9.2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 개정 (제3조 제2항)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
- 나. 장애와 상해의 기준 개정 (제5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개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
- 라.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 등 현행화(별지1, 2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34호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마.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을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로,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을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삭제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자” 를 “청구권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이나 의원” 을 “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자” 를 “청구권자”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 를 “계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 을 “도의회의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회의원” 을 “도의회의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 을 “충청북도 청주·충주의료원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 을 “도의회의원” 으로, “의회” 를 “도의회”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 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한다.

제11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 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지명하는” 을 “미리 지명한”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 를 “충청북도” 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구좌” 를 “계좌” 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 를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로 하고,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추가한다.
“상기자는” 을 “위의 사람은” 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직무상 <u>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u> ----- ----- <u>사망·장애·상해에 대한</u> <u>보상금지급</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직무</u> ”란 충청북도의회(이하 “ <u>의회</u> ”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 <u>의장</u> ”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u>삭 제</u> 3. “ <u>유족</u> ”이란 의원이었던 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부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직무</u> ”란 충청북도의회(이하 “ <u>도의회</u> ”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u>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u> <u>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의출장을 하는 경우</u> 2. <u>삭 제</u> 3. “ <u>유족</u>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u>공무상재해인정 기준</u>“에 <u>준한다</u></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u>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u>」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u>공무원연금법 시행령</u>」 제45조에 따른 “<u>장애등급</u>”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u>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u>」 제40조에 따른 “<u>장애등급</u>”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u>청구자</u>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u>본인이나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u></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u>청구자</u>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u>도지사</u>“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u>청구권자</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u>---</p> <p>② ----- ----- ----- ----- <u>청구권자</u>----- ----- -----.</p>

현행	개정안
<p>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 한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u>의장</u>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p>	<p>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 ----- - <u>계좌</u>-----.</p> <p>② ----- ----- <u>도의회의장</u>----- -----.</p>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명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의원</u> 중 1명 2. 의무직 공무원이나 <u>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장</u> 중 1명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u>자</u> 1명 <p>③ 제2항제1호에 따라 <u>의회의원</u>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의회의</u>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사람</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의회의원</u> -- 2. ----- <u>충청북도 청주·충주의료원장</u> ---- 3. ----- <u>사람</u> ----- <p>③ ----- <u>도의회의원</u>----- ----- <u>충청북도의회의</u> -----.</p>
<p>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u>사항</u>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p>제10조(심의회 기능) ----- <u>각호</u>의 <u>사항</u>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1조(심의회 위원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u>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1조(심의회 위원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위원장이 <u>지명하는</u>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u>총괄한다.</u> ②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u>미리 지명한</u> -----.</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u>도지사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따라</u> -----.</p>
<p>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도 정책기획관</u>으로 한다.</p>	<p>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충청북도</u> -----.</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u>위원에</u>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 --<u>위원에게는</u>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10.30., 일부개정]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18.9.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제정]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